



회원수첩

Business Information





회사소개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주)는 일본 동경에 소재하고 있는 (주) N.T.H에서 투자한 한국 현지법인 (설립일 : 2004년 5월 1일)으로 일본 (주)N.T.H로부터 인도산 식물성분 헤나를 비롯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직접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엔티에이치만의 독특한 영업방식과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 식물성분 헤나(HENNA)의 수입 판매 등

인도산 식물 성분 모발 제품인 퀸즈헤나(QUEENS HENNA)를 일본 N.T.H사로부터 직수입하여 회원 앞 판매하며, 모발용 샴푸, 호호바 오일(JOJOBA OIL), 헤어 컨디셔너, 헤어 미스트 등과 그 외에도 품질을 자부하는 엔티에이치만의 고유한 제품을 취급합니다. (P.3 ‘취급상품’ 참고)

● 헤나 살롱(HENNA SALON)의 운영

회원은 살롱에서 퀸즈헤나의 체험과 효과적인 사용법을 배울 수 있으며 홈파티 및 후원 활동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이념

엔티에이치의 사업을 통해 주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 [지식] [방법]을 제공하며 함께 일을 해 나감으로 발전적이고 안정적 삶을 지향하도록 한다.



회원가입

- 1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학생, 공무원, 교원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이해하고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본인 서명·날인한 회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 등록증과 회원 수첩을 교부 받습니다.
 - 3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구입할 권리와 제품의 교육과 지도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혜택이 주어집니다.
 - 4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후원 활동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5 회원 자격은 가입월의 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구매 실적과 활동 실적이 있는 회원은 매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실적이 없는 회원은 활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레귤러 회원과 슈퍼회원은 재구매 금액이 정가기준으로 연간 (가입월의 마감일 익일부터 기산) 5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취급상품

1 초회 세트 상품

1 세트의 가격은 15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구성은
주문서와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구매 상품

상품 종류	용 량	정 가 (원)
퀸즈헤나 (레드, 내추럴, 뉴브라운 각1봉)	100g	25,500
퀸즈헤나 허브모카	100g	30,600
NTH프로텍트 헤어샴푸	600ml	55,000
NTH프로텍트 헤어컨디셔너	260g	45,000
퀸즈 호호바오일	100ml	66,000
NTH 내추럴 헤어미스트	150ml	18,000
NTH 내추럴 바디워시	280ml	20,000
퀸즈아이케어 루테인플러스A	300mg×60 캡슐(18g)	55,000
퀸즈실크파워	60g(2g×30 포)	37,000
NTH 바이탈효소	90g(3g×30 포)	37,000
NTH 헬스치약	396g(99g×4 개)	32,000
큐라비 스킨케어 시스템 리퀴드클렌징	120ml	38,000
큐라비 스킨케어 시스템 아미노워시	60g	32,000
큐라비 스킨케어 시스템 스킨컨트롤로션A	120ml	44,000
큐라비 스킨케어 시스템 모이스트F에센스	30ml	66,000
큐라비 메모리언트R크림	30g	77,000
큐라비 스킨케어 시스템 유브이 커트밀크	20ml	30,000
NTH 스킨케어 마스크	150g(30g×5 매)	15,000

재구매 상품은 직급별로 상기 정가에서 1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 급	레귤러회원	슈퍼 회원	S-1	S-2	G-1	G-2
할인율	10%	20%	25%	25%	30%	30%

3 부대 상품

상 품 명	가 격 (원)
브러쉬	2,000
케이프(가운)	9,000
퀸즈헤나 가운	25,000
믹싱 볼	9,000
애용자 카탈로그	1,500
비즈니스 카탈로그	20,000
고무장갑(2켤레)	1,500
NTH 퀸즈지퍼락	1,000

※ 모든 상품의 종류와 가격은 회사 정책에 따라 사전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구입

1 주문 방법

● 직접 주문

회사에 방문하여 상품 주문서를 작성하고 주문

● 전화 주문

본인이 직접 회사로 주문의뢰하고 상품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의 결제승인을 얻어 주문

● 우편 및 FAX 주문

본인이 작성하신 상품 주문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회사에 송부하고 상품대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거나 신용카드의 결제승인을 얻어 주문

● 인터넷 및 모바일 주문

당사 홈페이지 www.nthi.co.kr 및 스마트폰의 퀴즈헤나 앱을 통하여 주문

2 배송료

상품의 우송을 원할 경우 구입 상품의 가격이 정가 기준으로 7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료배송 됩니다. 7만원 미만의 경우 소정의 배송료를 상품대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대금 결제 방법

1) 현금 결제

2) 신용카드 결제

3) 무통장 입금

회사 계좌로 주문 대금을 입금

(입금자 이름이 회원 이름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로 통보요망)



회원의 직급과 승격

1 직급의 종류



- 회원은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회사의 상품 구입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회원이 초회 세트 상품 1세트를 구입하면 레귤러 회원이 됩니다.
- 회원이 초회 세트 상품 4세트를 일괄 구입하면 바로 슈퍼 회원이 됩니다.

2 직급의 승격

1) 슈퍼업(레귤러 회원 → 슈퍼 회원)

레귤러 회원이 아래 ① ② ③ 중 하나를 충족하면 슈퍼 회원으로 승격됩니다.

- ① 상품 3세트를 일괄 구입 (구입 기한 없음)
- ② 초회 구입월의 마감일(매월 2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 3세트를 구입
- ③ 1개월(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 기간 동안 10명 이상의 레귤러 또는 슈퍼 회원을 직접 소개

2) 특별 회원(S-1 이상)으로의 승격

- 레귤러 이상 회원의 육성실적에 따라 승격되며, 승격조건(동시 승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급의 인정과 수당의 계산은 승격조건을 달성한 달의 익익월부터 적용됩니다.

※ 특별회원의 승격은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하며 직급을 건너뛰어 승격할 수 없습니다.

자격	승격 조건		
	직접 소개한 레귤러 이상 회원 (회원가입 이후의 누계)	기간	그룹의 신규(레귤러 또는 슈퍼회원) 증가인원
S-1	5명	2개월	50명 이상
		동시 승격 조건 : 해당 기간에 별도 라인에 25명 이상	
S-2	10명	5개월	300명 이상
		조건 : “S1” 2계열 필요	
		동시 승격 조건 : 해당 기간에 별도 라인에 “S1” 2계열 필요	
G-1	15명	8개월	1,000명 이상
		조건 : “S2” 1계열과 “S1” 이상 2계열 필요	
		동시 승격 조건 : 해당 기간에 별도 라인에 “S2” 1계열과 “S1” 이상 2계열 필요	
G-2	20명	10개월	2,000명 이상
		조건 : “S2” 이상 3계열과 “S1” 1계열 필요	
		동시 승격 조건 : 해당 기간에 별도 라인에 “S2” 이상 2계열과 “S1” 2계열 필요	

주) ① 기간은 마감 월(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를 1개월로 함) 기준입니다.

② 그룹증가인원의 계산은 레귤러회원 1명, 슈퍼회원 4명, 슈퍼업 1명으로 합니다.(레귤러 가입 후 같은달에 슈퍼업 하는 경우는 슈퍼회원으로 계산)

단, 직접소개인원의 계산은 레귤러 회원, 슈퍼 회원 모두 1명씩으로 함
동시 승격은 산하의 회원과 자신이 같은 달에 동일한 직급으로 승격하는 것을 의미함

③ “S-2”이상의 직급의 인정은 상위 “G-2”의 추천 및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④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가족회원 등에 대하여는 특별회원 승격이 제한 됩니다.

[그룹 증가인원]의 계산은 본인의 직급을 추월하여 본인보다 높은 직급자의 그룹인원은 제외합니다.

[계열]이라함은 직접소개를 기준으로하여 이루어진 계열을 하나의 계열로 봅니다.

3 직급의 강격

특별회원(S-1이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강격 될 수 있으나 다음의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직급이 자동강격 됩니다.

직급	선택-[조건 1] 연간 자기그룹육성인원	선택-[조건 2] 연간 자기그룹 재구매 총액 (본인 재구매 금액은 제외)
S-1	6명 이상	정가 200만원 이상
S-2	50명 이상	정가 1,000만원 이상
G-1	150명 이상	정가 2,400만원 이상
G-2	360명 이상	정가 4,800만원 이상

※ 선택 조건 중 [조건 1], [조건 2]중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1직급 자동 강격

※ 인원수 계산은 레귤러 회원, 슈퍼 회원 모두 1명씩으로 함

♣ 자동 강격 판정의 대상 기간

1년 단위(매년 5월 21일 ~ 다음해 5월 20일)

♣ 직급의 복귀

자동 강격한 바로 다음 1년간의 실적이 강격 전 직급의 [조건 1과 2]를 모두 충족하고 직상위 G-2의 추천이 있는 경우 직급이 복귀 될 수 있습니다.



후원수당

1 육성수당

레귤러 회원과 슈퍼 회원(슈퍼 회원 승격 포함)을 육성하였을 때에 직급별로 아래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레귤러 회원 육성 수당】

(단위 : 원)

직급 단	회원	레귤러	슈퍼	S-1달성	S-1	S-2	G-1	G-2
1	8,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7,000	7,000	7,000	7,000	7,000
3				5,000	5,000	5,000	5,000	5,000
4					3,000	3,000	3,000	3,000
5					3,000	3,000	3,000	3,000
6					3,000	3,000	3,000	3,000
7						2,000	2,000	2,000
8							2,000	2,000
9								2,000

【슈퍼 회원 육성 수당】

(단위 : 원)

직급 단	회원	레귤러	슈퍼	S-1달성	S-1	S-2	G-1	G-2
1	8,000	1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3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4					12,000	12,000	12,000	12,000
5					12,000	12,000	12,000	12,000
6					12,000	12,000	12,000	12,000
7						8,000	8,000	8,000
8							8,000	8,000
9								8,000

- 회원과 레귤러 회원은 산하에 슈퍼 회원을 육성하였을 때에도 회원과 레귤러 회원의 육성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 '단'의 계산은 레귤러 회원부터 포함됩니다.
- 수당의 계산은 매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슈퍼 이상 회원은 산하에 레귤러 회원이 육성된 경우, 레귤러 회원 육성 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이후에 해당 레귤러 회원이 슈퍼 회원으로 승격하면 슈퍼 회원 육성 수당과 기 지급한 레귤러 회원 육성 수당의 차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특별 회원 추가 수당】

직급	추가수당 금액 (원/1인당)				
	자기그룹	동격 1단	동격 2단	동격 3단	동격 4단
S-1	레귤러 2,500	1,000	-	-	-
	슈퍼 10,000	4,000	-	-	-
S-2	레귤러 2,500	1,000	500	-	-
	슈퍼 10,000	4,000	2,000	-	-
G-1	레귤러 2,000	1,500	1,000	500	-
	슈퍼 8,000	6,000	4,000	2,000	-
G-2	레귤러 2,000	1,500	1,000	500	500
	슈퍼 8,000	6,000	4,000	2,000	2,000

주) 동격 : 자신의 산하에 존재하는 자신과 같은 직급의 회원

- ♣ S-1 이상의 특별 회원에 대해서는 자기그룹 및 동격그룹의 신규 육성실적에 대하여 상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며 특별 회원의 자격과 추가 수당 계산은 자격 달성 월의 익월월부터 적용됩니다.
- ♣ 자기그룹에서 슈퍼업 발생 시, 슈퍼 육성시의 금액과 레귤러 육성시의 금액 차액인 6,000원(G1, G2)과 7,500원(S1, S2)이 지급됩니다.(10명 소개 슈퍼업은 제외)

2 재구매수당

1) 자기그룹 산하 회원의 재구매 실적(회원가)에 따른 수당

- * S-1 이상의 특별회원은 산하 회원의 재구매 실적에 대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직급별로 5%~27%의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 * 산하에 수당을 수령할 직급자가 없어 직급을 건너뛰게 되는 경우 직급 단계별로 5~6%씩 순차적으로 합산 지급됩니다.

본인직급 →		G-2	G-1	S-2	S-1
산하회원 직 급	G-1	6%			
	S-2	12%	6%		
	S-1	17%	11%	5%	
	슈퍼	22%	16%	10%	5%
	레귤러	27%	21%	15%	10%

2) 동격 그룹의 재구매 실적에 따른 수당

S-1 이상의 특별회원에게는 산하 동격그룹의 재구매 총금액(회원가)에 대하여 아래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S-1	S-2	G-1	G-2
동격 1단	재구매 총액의 2%	재구매 총액의 2%	재구매 총액의 2.5%	재구매 총액의 2.5%
동격 2단	-	재구매 총액의 1%	재구매 총액의 1%	재구매 총액의 2%
동격 3단	-	-	재구매 총액의 1%	재구매 총액의 1%
동격 4단	-	-	-	재구매 총액의 1%

3 응원 수당

현장에서 제품 사용지도를 통하여 회원을 육성하였을 경우에 라인에 관계없이 아래의 응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레귤러 회원 육성 : 육성 회원 1명당 10,000원 이내
- ◆ 슈퍼 회원 육성 : 육성 회원 1명당 30,000원 이내
- ◆ 레귤러 회원 등록 월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슈퍼업 승격시 최초 응원자에게 차액 20,000원 지급(직접소개 10명 슈퍼업 제외)

- * 1개월 기간 중 신규 레귤러 또는 슈퍼회원 3명 이상을 응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해당 없음)
- * 응원 수당은 S-1 이상 회원(S-1달성자 포함)으로서 상위 라인인 G-2 또는 회사로부터 응원자격인정(구 시술지도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4 승급 축하금

「S-2」회원으로 승급시 인정서와 함께 승급 축하금 (₩ 800,000) 지급
※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5 G-2 그룹관리 수당

총매출액의 3% 이내에서 G2 회원을 대상으로 그룹관리수당을 지급 합니다. 지급기준과 방법은 회사가 정책적으로 정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프로모션

총매출액의 3% 이내에서 여행 프로모션(년 2회 이내)등을 실시 합니다.

로 업 제도

특별회원(S-1이상) 중 그 달의 수당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이 있을 경우 단계를 압축 조정합니다.

수당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익월 15일에 회원이 제출한 본인 계좌로 이체 지급합니다.



수당의 취득 조건

특별 회원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당월의 수당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 급	수당취득기준
S-1	(1) 본인 구매 포함 자기 그룹의 재구매 총액이 정가 40만원 이상 (2) 자기 그룹에서 레귤러 또는 슈퍼회원 2명 이상 육성
S-2	(1) 본인 구매 포함 자기 그룹의 재구매 총액이 정가 120만원 이상 (2) 자기 그룹에서 레귤러 또는 슈퍼회원 6명 이상 육성
G-1	(1) 본인 구매 포함 자기 그룹의 재구매 총액이 정가 220만원 이상 (2) 자기 그룹에서 레귤러 또는 슈퍼회원 10명 이상 육성
G-2	(1) 본인 구매 포함 자기 그룹의 재구매 총액이 정가 440만원 이상 (2) 자기 그룹에서 레귤러 또는 슈퍼회원 15명 이상 육성

* 회원 수 계산시 레귤러 회원, 슈퍼 회원 모두 1명씩으로 함





하위 판매원의모집과 후원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주)의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고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주)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사업할 기회를 주선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동참한 신규 회원들이 회사의 상품 판매와 후원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여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모집 및 후원 활동이라 합니다.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주)에서는 이 모집과 후원에 관련하여 회원을 규제하는 강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재화 등의 반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18조 관련

구입한 제품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 반환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 사실을 입증하는 상품 주문서(회원용),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됩니다.

-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을 훼손한 경우
- 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상품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제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세트 상품의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

반품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2개월 이내는 대금의 5%, 2개월 경과 3개월 이내는 대금의 7%를 공제합니다.

수당이 지급된 판매분에 대하여 반품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기 지급된 수당 또는 지급될 제수당에서 공제합니다.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판매원에게서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합니다.



탈퇴

회원이 탈퇴를 희망할 때는 회사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에는 본 회원수첩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등 회사에 제출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사 혹은 후원자는 회원의 탈퇴 의사에 대해 저지하거나, 어떠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반품 규정 이외의 탈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회원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다단계판매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회원을 탈퇴시킵니다.



회원 윤리 강령

• **(법규의 준수)** 회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 중 다단계 판매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품위 유지)** 회원은 사업활동의 주체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행동하며, 다단계 판매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성실한 후원 활동)** 회원은 자신이 후원하는 회원에 대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후원 활동 및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 내용의 숙지)** 회원은 회사의 사업을 소개 또는 후원 활동을 하면서 상품 지식과 사업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전파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각종 교육 및 행사의 참여)** 회원은 회사 및 그룹리더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모임, 세미나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술선수범 함으로써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가명 및 차명 금지)** 회원은 가명 또는 차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품 구매시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여서는 안됩니다.

• **(적정 재고의 보유)** 회원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상품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유 의지에 의한 활동)** 회원은 자유 의사에 따라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을 하되 회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 및 판촉 활동)** 제품 안내서 등 홍보물은 회사에서 제작한 것을 이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개인의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임을 암시하여서는 안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중활동의 금지)** 회원등록 후 후원활동을 하면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이중으로 판매원 활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영업 방해의 금지)** 회사에 등록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타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타사로의 가입을 유도하거나 회사를 비방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회사의 판매 조직을 와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유인행위의 금지)** 회원은 타 라인을 비방하거나 타 라인에 이미 등록된 회원에 대해 탈퇴를 교사하는 등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징계)** 회원이 관계 법령과 본 윤리 강령 및 회사에서 정한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사전 통보 없이 회원의 자격정지 및 직권해지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사가 판단합니다.



회원관리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엔티에이치 인터내셔널(주) (이하 ‘회사’라 한다)에 등록된 판매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지위와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원의 적법한 활동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회원)

- ①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정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정의 절차에 의거 회사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② 회원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자로서 관련 법률 및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되 자신의 판단과 재량으로 회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 ① 회원 자격의 유지 기간은 1년 단위로 산정하며 유지 기간 내에 소정의 구매 실적이나 활동 실적이 없는 회원은 자격상실 또는 강격 대상으로 한다.
- ② 제①항의 자격유지(자격상실 및 강격)에 관한 기준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조 (규정의 적용)

회원 관리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과 행정기관의 고시, 지침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 제 2장 회원 등록 및 탈퇴

제 5조(회원 등록)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소정 양식의 회원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로부터 승인을 득함으로써 회원으로 등록된다.

제 6조(결격 사유)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원 등록이 금지된 자
2. 학생
3. 기타 회원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 7조(회원 탈퇴)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회원탈퇴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자격 상실)

- ① 회원이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사망 또는 본인이 스스로 탈퇴할 때
 2. 본 규정에 의해 직권해지 처분을 받았을 때
 3. 회원으로 활동 중에 본 규정 제6조에서 정한 회원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4. 회원으로 활동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
 5. 회원자격 유지 기준에 미달하여 회사가 자격 상실의 조치를 취한 때
- 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회원의 회사에 대한 채무는 존속되며, 특히 본인 또는 하위 판매원의 반품 발생시 기 수령한 후원수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 9조(직권 해지)

- ①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징계)에

의거하여 회원자격을 직권 해지할 수 있다.

1. 본 규정에서 정하는 중대한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그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요청한 기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반복하여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원 활동을 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 손상시켰거나 기타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동종업계 타회사에 가입하여 회사의 다른 회원에게 타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회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으로 회사의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4. 회사의 탈퇴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 ② 집단 행동으로 회사 업무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직권 해지 외에 상위 직급자에 대하여도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 10조(자격 상실 자의 재등록)

- ① 회원 자격이 상실된 자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등록할 수 없다.
- 단, 본 규정 제8조 ①항 5호에 따라 자격 상실된 경우 및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직권해지 처분으로 인한 자격 상실자와 S1이상의 특별회원으로서 자발적 탈퇴로 인하여 자격상실된 자는 별도 심의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다.

■ 제 3장 회원의 의무 등

제 11조(회원의 직급 및 승급)

- ① 회원은 구매 및 후원 활동 실적에 따라 등록회원,레귤러 회원, 슈퍼 회원, S-1, S-2, G-1, G-2 회원으로 구분되며 S-1이상의 회원을 특별 회원이라 한다.
- ② 회원 직급의 승급조건, 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원수첩 등에서 따로 정한다.

제 12조(회원의 금지 행위)

회원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와 본 규정 및 회원 윤리 강령에 반하는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회사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타 라인에서 차명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행위

나. 회원 가입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다. 자신이 회사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타 회원에게 판매하는 행위

라. 타 회원의 현금구매를 본인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체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제 13조(회원 지위의 상속)

- ① 회원 지위의 상속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상속인은 회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② 회원 지위의 상속을 받고자 할 경우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 중 1인을 지정하여 지위 승계 신청을 하
여야 한다.

제 14조(소개자 변경)

- ① 회원은 최초의 소개자를 변경할 수 없다. 단, 등록과정에서의 명
백한 업무착오, 상위후원자의 탈퇴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을 경우 회사는 관련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심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 ② 이미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다른 이름으로 타 라인에 이
중 등록하거나 제10조 1항의 규정을 악용하여 소개자를 변경하
도록 한 행위가 판명될 경우 소개자 변경 이후에 등록된 산하회
원 전체를 원래대로 이동조치하고, 행위 관련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제 15조(교육)

회원은 회사가 주관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위 라인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16조(가족회원에게 대한 제한)

- ① 가족회원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라인으
로 등록하여야 하며, 타 라인에 등록된 경우에는 즉시 탈퇴하거
나 선 등록된 가족회원의 라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때 후 등
록된 회원이 직접 소개한 하위라인은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함께 라인 변경할 수 있다.
- ②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가족 회원에 대해서는 특별 회원에 관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수당 취득만을 목적으로 등록된 가족회원은 회사의 판단으로 직
권 해지할 수 있다.

제 17조(징계)

- ① 본 규정과 회원 윤리 강령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 회사는 사안
의 경중에 따라 경고, 후원 수당 감액 또는 지급정지, 자격정지,
강격, 직권해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경고 :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후원 수당 감액 또는 지급정지
후원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정지
(징계 해당 마감월차부터 적용)

다. 자격정지

사안에 따라 1개월 내지 6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 정지를 하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상품구매를 포함한 일체의 회원 활동이 정지되며, 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정지 사유**

- ① 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한 경우
- ② 회사 및 회원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회원들에게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경우
- ③ 특별 회원으로서 하위 라인에 대한 교육 및 후원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 ④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라. 강격

- ① 특별회원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안에 따라 자격정지에 갈음하여 직급 강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직급승격 후 3개월 이내에 산하회원의 탈퇴나 반품으로 인하여 해당직급의 승격조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급을 강격시킬 수 있다.

마. 직권해지

제 9조의 회원자격 해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2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회원자격을 직권해지 하며, 수당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받을 자격이 상실된다.

- ② 징계는 종류별로 또는 2종류 이상의 복수의 징계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있다.

■ 제 4장 일반사항

제 18조(세부사항)

본 규정의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정**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단계판매원의 금지행위

다음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금지행위]와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등의 금지]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위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지행위]

- ①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②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③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④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⑤ 상대방의 청약에 없�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 ⑥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⑦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⑧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⑨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⑩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⑪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 ①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 ②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③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④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⑤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⑥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⑦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⑧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해설 자료

본 자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 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주)



다단계판매란?

-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과)·사업자단체·소비자 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 ③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④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Tel. 02-2058-0831~9)과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제품마다 소비자피해보상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 ② 다단계판매원은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 ③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반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④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 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❶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 ❷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 ❸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 ❹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 ❺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 ❻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 ❼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 ❽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 ❹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❺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❶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 ❷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 ❸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 ❹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 ❶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www.nthi.co.kr

엔티에이치 인터내셔널(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 (논현동 크레아빌딩 4층)

본 사 | TEL : (02)543-6359 FAX : (02)540-6359

서울살롱 | TEL : (02)543-6357 FAX : (02)548-6357

부산살롱 | TEL : (051)804-6357 FAX : (051)804-6359

울산살롱 | TEL : (052)261-6357 FAX : (052)261-6358

이 수첩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5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입니다.

2025년 8월 8일